

제 목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환전 편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 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RFI 등록과정 협의, 런던 현지 투자자 설명회(Investor Relations, 2.6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을 허용합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으며, 이는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집니다. 현행 외환 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 하거나, 국제 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되어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 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 기존에는 외국 자산운용사 B가 반도체/이차전지/AI에 투자하는 자펀드 100개를 신설 하면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별도 환전 필요
→ 글로벌 자산운용사 B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그 외에 그간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계 기관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환·금융당국은 위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팀장 김신영(02-759-5967), 과장 조현명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과장 정여진(044-215-4750), 사무관 김용준
국제금융과 과장 이차웅(044-215-4710), 사무관 이용준
외화자금과 과장 유창연(044-215-4730), 사무관 이동훈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강영수(02-2100-2950), 사무관 박준상
금융감독원 외환총괄팀 팀장 이민규(02-3145-7922), 수석 최승록

E-mail: fxmarket@bok.or.kr, hyeunmyeong@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16, 4028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I 검토 배경

- 외국 투자자 및 금융기관들은 RFI 등록 과정, 런던 IR 등을 통해 국내투자시 원화 환전, 증권자금 결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7월 정식시행 이전까지 외국인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개선 필요
- ① 제도개선 필요과제에 대해서는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
- ② 국내 제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오해 또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과제는 자료 배포,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

II 주요 개선필요 과제

1. 제도개선 필요 과제

(1)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Overdraft) 허용

- **(현황)** 외국인투자자는 국내투자시 결제실패 위험 등을 이유로 주로 국내 관리은행과만 외환거래 실시 → 환전비용 인상 요인
 - ※ **외국인 주요 투자경로**: 글로벌 관리은행(예: 글로벌IB 뉴욕본점)에 증권매매 지시 → 국내 증권사 매수지시 & 국내 관리은행(예: 국내 외은지점) 통해 자금 환전
 - 외국인 및 글로벌 관리은행은 **제3자 은행***(RFI 포함)을 통한 환전시 증권 결제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을 극도로 우려**
 - * 제3자 외환거래 예시: 투자자 → 글로벌 관리은행 → RFI → 국내 관리은행
 - ** (예) 제3자은행은 환전자금을 결제당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관리은행에 송금 → 시스템 오류 등 송금 실패 → 결제실패 및 위약금 발생(신인도 하락)
- **(대응)** 외환거래 체결 사실을 관리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내 증권결제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허용
 - ※ 現 외환법규 상 위키시 외국인의 원화투매 방지를 위해 원화차입 원칙적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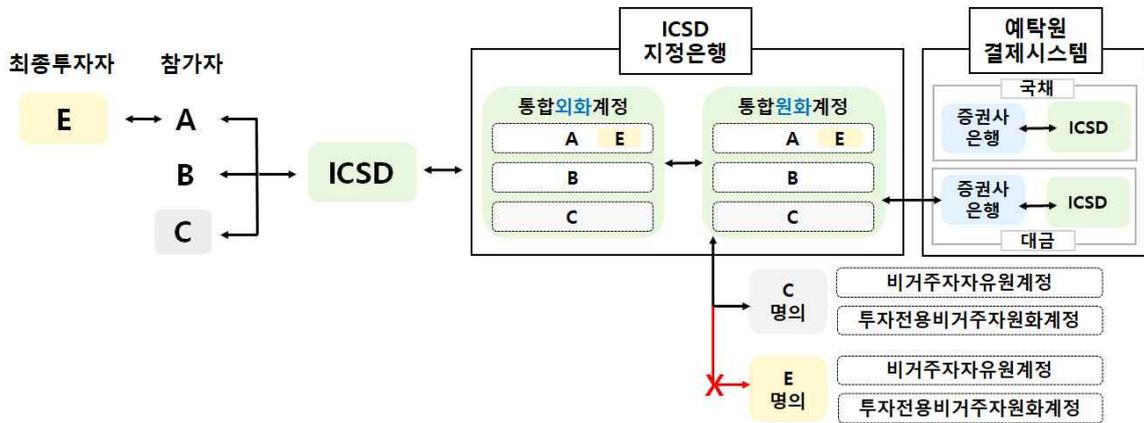
[2] 국제통합계좌 활용성 확대*

- ※ WGBI 지수 편입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클리어 스트림 등)를 활용한 국제통합계좌 운영을 '24.6월부터 재개할 예정
- * 외국인은 국내 계좌개설 불편, 전략노출 최소화 등 차원에서 ICSD 통한 투자 선호

□ **(현황)** 現 규정상 ICSD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송·수금 불가
→ 글로벌 관리은행 등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불편 야기

- ※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글로벌 관리은행을 통해 환전·증권결제 등 실시
→ 글로벌 관리은행(참가자)만 ICSD에 참가하고 최종투자자는未가입

< 현행 국제통합계좌 자금흐름 개념도 >



① **(기존투자자)** 기존에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투자자가 ICSD를 활용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한 원화를 외화로 재환전 하여 ICSD 해외계좌 송금 필요* ⇒ 이중 환전비용 발생

- * (예) 유로클리어↔참가자(글로벌 관리은행 등) : 원화 송·수금 가능
유로클리어↔최종투자자(자산운용사, 법인투자자 등) : 원화 송·수금 불가능

② **(신규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신규투자를 위하여 증권매수 대금 환전시 ICSD 지정은행만 활용 가능* (기존투자자도 해당)

- * (예) 유로클리어의 지정은행인 국내 A·B은행을 통한 간접 환전만 가능하고, 기타 은행에서 환전한 자금을 활용한 유로클리어 투자 제한

□ **(대응)** ICSD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 허용

- 본인 명의 원화계정과의 송·수금 허용으로 이중환전 불편이 해소되고, 최종투자자는 ICSD 지정은행 이외 은행에서 환전 가능
- 지정은행이 ICSD에게 제공받은 최종투자자 정보(IRC, LEI*)를 통해 실제 거래주체를 확인하도록 하여 불법거래 방지
- ※ 유로클리어 등 ICSD는 참가자 및 최종투자자 명의 계좌로 원화 송·수금시 자금의 실제 소유자인 최종투자자의 식별정보 제공 예정

* Legal Entity Identifier: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한 20자리 법인 식별기호

(3) 주식통합계좌* 이용자의 환전절차 간소화

* Omnibus Account: 다수 투자자(또는 다수 펀드)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

□ (현황) '23.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등록제(IRC)가 폐지되고, 주식통합계좌 보고의무도 완화*

* 최종투자자별 보고주기를 투자 즉시(T+2일 이내)에서 월 1회(익월)로 완화

○ 그간 법인(예: 자산운용사)이 동일하더라도 별도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펀드별로 투자등록 및 증권·현금계좌 개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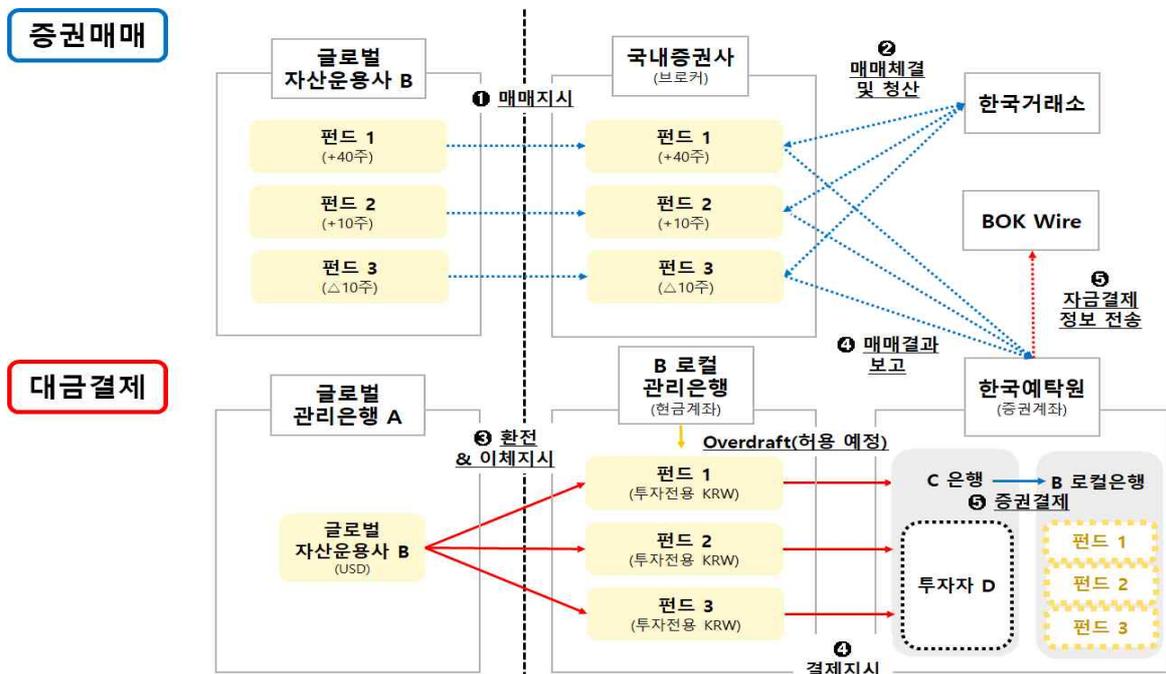
* (예) 글로벌 자산운용사 B가 한국 반도체/이차전지/AI에 투자하는 3개 펀드 신설
→ 펀드별 투자등록을 마친 후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개설요

□ (대응)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별도 관리은행 선임, 현금계좌 개설이 필요없도록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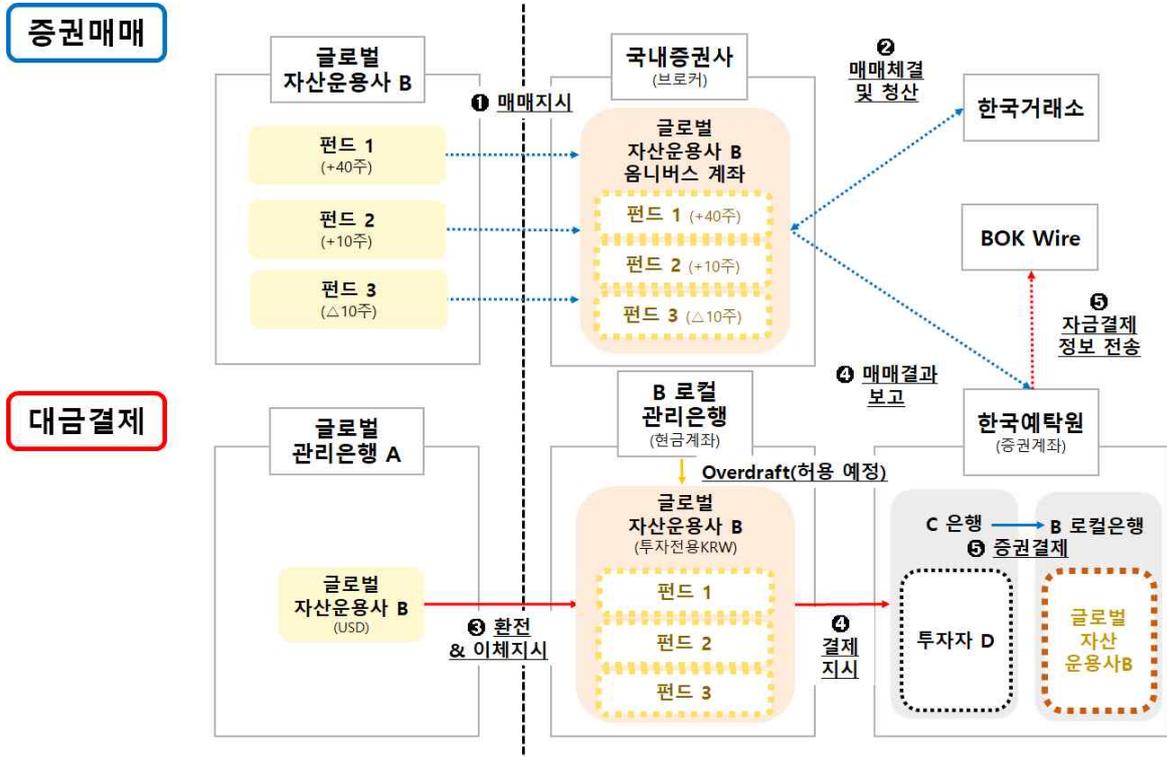
< 규정개정(안) 예시 >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적용범위) ① 비거주자(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 (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한다. 단, 외국인투자자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가 다음 각호의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 또는 제 7-45조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증권대차거래(이하 이 관에서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의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이 관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현행 글로벌 자산운용사 증권결제시 자금흐름 개념도 >



< 개선: 글로벌 자산운용사 증권결제시 자금흐름 개념도 >



2.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 유권해석 실시

(1) 사전 원화환전 명시적 허용

□ (현황) 외국인들은 증권투자 이전이라도 좋은 가격에 미리 환전하려 하나, 국내은행은 실거래 없는 환전을 거부한다고 오해

※ (오해사례) 국채 매수後 결제를 위해 원화를 환전하여 투자계정 입금 → 허용 국채 등 증권 매매 없이 대기성 자금을 환전 → 불허

□ (대응) 해외에서 자금 유입 후 본인 계정에서 원화를 사전 환전하는 경우, 별도 규제가 없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화

※ 이미 국내은행들은 별도 제한 없이 외국인의 외화자금 유입·환전 허용 중 → 다만, 국외 유출시에는 자본·배당·근로소득 등 국내 취득경위 사후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④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4.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6.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 명의의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2] 제3자 환전(Third-Party FX) 활성화

□ **(현황)**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은행에 원화계좌를 1개만 개설하면 모든 국내은행과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환전절차 간소화*

* (기존)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통해서만 환전·결제 가능
 → (개선) 본인 계좌가 없는 은행과의 환전 후 계좌 보유 은행으로 이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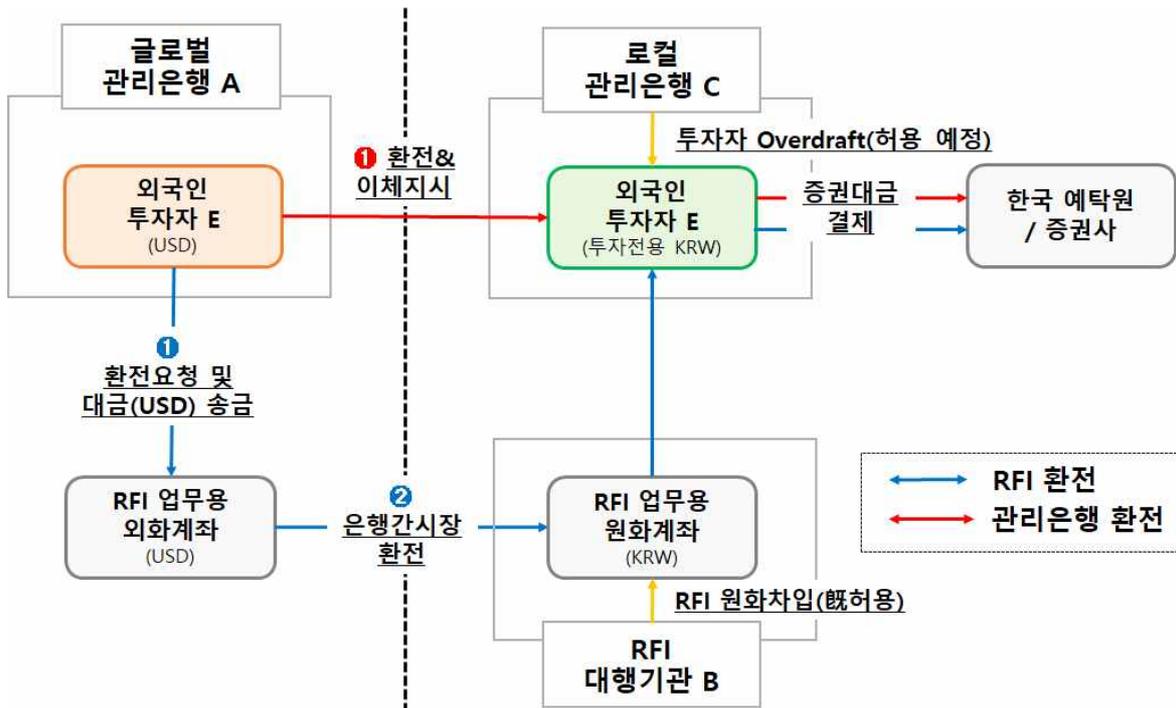
○ 실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홍보부족***, **외환법상 확인의무 수행에 대한 법적 부담** 등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 글로벌IB C(런던 IR, 2.6일), 연기금 D(실무급 면담, 2.2일)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또는 자금주들은 여전히 한국의 제도개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 **(대응)**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을 국내은행에 공식 배포하고 영문 보도자료 등 대외 홍보 강화

※ 주요 FAQ, 결제 과정에서의 세부 확인절차 명시, 영문 자료·IR 확대 등

< 제3자 외환거래 자금흐름 개념도 >



< 기관별 확인의무 주요내용 >

기관	주요 확인대상
RFI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화·원화계좌 명의 동일성
대행기관	수신처(RFI 외화계좌), 송금처(관리은행 내 고객 투자전용계좌)
관리은행	수신처(RFI 원화계좌), 투자전용계정 예치·처분사유 해당여부 등

(3) 외국 금융기관 실수요 증빙 규제 폐지 명확화

- **(현황)** 외국인은 국내투자시 환헤지의 어려움으로 원화자산 매매를 포기하거나, 수수료가 높지만 결제가 용이한 NDF 선호
 - 자본법령상 전문투자자*인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실수요 증빙 불필요 (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의2②)
 -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전문성 구비,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위험감수 능력이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투자자(↔ 일반투자자)
 -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들은 「외국환관리법」 당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실수요 증빙규제*가 잔존하는 것으로 인식
 - * 舊 「외국환관리법」상 선물환거래는 무역대금 결제 등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되었으나, '99년 해당 규제는 폐지
- **(대응)** 환헤지 여건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은 실수요 증빙이 불필요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외홍보 강화
 - ※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외국 금융기관·연기금 등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자 투자금액의 80%를 상회